

상호 교류 · 협력 협정서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(이하 “양 기관”)가 온라인 교육콘텐츠 및 부가서비스 활용을 통하여 상호간의 교류 · 협력을 증진하고, 콘텐츠 산업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교류 · 협력 내용) 상호 교류 · 협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1. 사이버콘텐츠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콘텐츠 서비스에 관한 사항
2. 온라인 학습을 위한 전용 ASP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향후 추가적인 온라인 교육콘텐츠 및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
4. 기타 인력양성사업과 상호간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
5. ‘한국콘텐츠진흥원 연수 협력 학교’ 라는 타이틀 사용에 관한 사항

제3조 (협정기간) 본 협정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협정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에 의해 서명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. 이 협정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변경한다.

제4조 (권리 및 의무의 승계) 본 협정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제5조 (기 타) 본 협정서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간의 이의가 있거나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양측 간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.

본 협정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10월 18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장 홍상



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

교장 박익

